##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040

발의연월일: 2024. 8. 21.

발 의 자:서일준·고동진·권영세

이헌승 • 박성민 • 백종헌

강대식 · 조경태 · 윤상현

조승환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포·도검·화학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총포·도검 등을 활용한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는 가운데 총포·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총포·도검 등의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도 포함하여 총포·도검 등의 잠재적인 범죄사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 시키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실형"을 "형"으로, "그 집행"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집행"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		
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자의 결격사유 등) 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			
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u>실형</u> 을 선고받	3 <u>형</u>		
고 <u>그 집행</u> 이 끝나거나(집행	<u>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u>		
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로 확정된 후 또는 그 집행-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